#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3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김정호

이기헌 • 민병덕 • 신정훈

송재봉・김 윤・정태호

소병훈 • 한정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종합복지관

제31조의2 중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를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23제2항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냉난방 비용의"를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 당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 구 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의22 및 제39조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2(노인종합복지관) ①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담 및 돌봄 서비스 : 지역사회 노인들의 신체적 •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관리 및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2.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 노인의 질병예방,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하여 건강검진, 건강상담, 급식, 통증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3. 노년사회화교육 서비스 :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를 위하여 평생교육, 취미·여가,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4. 정보화교육 서비스 : 노인과 다른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5. 사회참여 · 권익증진 서비스 : 노인의 사회적 ·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 연계, 소득 지원, 후원 · 자원봉사 등 지역자원 동원사업, 노인 인권보호 · 권익증진 관련 교육 · 캠페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6. 그 밖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서비스
- ②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3(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를 "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한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3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로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를 "제37조제1항

•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3제1항의"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종합복지관을"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를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3제2항에"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제39조의22 및 제3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노인종합복지관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 따른 신고와의 관계) -----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제2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 항, 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23 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 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 <삭 제>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 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 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 3. (생략)

② (생략)

입비 등의 보조)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2.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현행과 같 유)

(2) -----

영에 필요한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의-----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 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 · 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39조의22(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 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상담 및 돌봄 서비스 : 지역
  사회 노인들의 신체적·정서
  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을 위하여 노인의 필요와 욕
  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저소득층 노
  인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상
  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
  관리 및 체계적인 돌봄을 제
  공하는 서비스
- 2.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 노인 의 질병예방,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위하여 건강검진, 건 강상담, 급식, 통증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3. 노년사회화교육 서비스 : 노 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 활 영위를 위하여 평생교육, 취미·여가,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4. 정보화교육 서비스 : 노인과 다른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 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5. 사회참여·권익증진 서비스
  :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일자리 연계, 소득 지원, 후원·자원봉사 등지역자원 동원 사업, 노인 인권보호·권익증진 관련 교육 ·캠페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6. 그 밖에 노인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로 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서비스
- ②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3(노인종합복지관의 설 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②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② (생 략)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 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인 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 치신고, 설치 · 운영자가 준수하 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

(현행과 같음)

$\odot$			
		<u>Z</u>	<u>나, 제3</u>
9조제2항	의 규정여	게 의하	여 재
<u>가노인복</u>	지시설을	설치형	<u>한 자</u>
또는 제3	9조의23	제2항의	규정
<u>에</u> 의하	여 노인	종합복7	<u> 기관을</u>
설치한 지	<u> </u>		

- ④ (생 략)
-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 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⑥ (생략)

-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노인</u> 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 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
     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④ (현행과 같음)
5
노인여
<u>가복지시설의 장, 재가노인복지</u>
시설의 장 또는 노인종합복지
관의 장은
 ② (원레기 기 O)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u>노인여</u>
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1. <u>제37조제4항</u> , 제39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3제4항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또는 폐지되거나 보인여가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1. 2. (생략)
-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 5. (현행과 같음)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
지관이
④ (현행과 같음)
세45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2. (현행과 같음)
3 <u>利</u>
37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3제1항의

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⑥ (생 략)

⑦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생 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
지시설 또는 제39조의2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종합복지
<u>관을</u>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1
<u>제37조제2항</u> , 제39조제2항 또
<u>는 제39조의23제2항에</u>

정·<u>노인여가복지시설</u> 또는 <u>재가노인복지시설을</u> 설치하거 나 운영한 자

2. ~ 6. (생략)

-----노인여가복지시 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2. ~ 6. (현행과 같음)